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순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4
----------	---------

발의연월일 : 2021. 5. 26.

발 의 자 : 송순효, 강선영, 신낙형, 김동협
김성한, 이종숙, 박성호,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 제공의 근거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함께 스마트도시로서 강서구를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현황조사, 관리지침 마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품질관리,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 나. 협조부서 : 정보통신과
- 다. 입법예고 :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